

24.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(안) 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2000-29호 2000. 1. 29

개정이유

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만이 건축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(2000. 1. 12. 법률 제6,112호)에 따라 동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가.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을 구분함에 있어 연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함.

- (1)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되, 여러 동의 건축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 1건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함.
- (2)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함.
- (3) 시공중 설계변경으로 면적이 증가한 건축물은 시공중인 면적과 설계변경으로 증가하는 면적의 합계로 함.

나. 건축물의 면적에 관계없이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학원, 식품점객업시설, 휴게소, 병원, 쇼핑센터, 철도역사, 관광숙박

시설 및 관광객이용시설 기타 시·도조례에서 안전관리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 함.

다.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로서 다음과 같이 정함.

- (1) 시 또는 읍지역중 비 도시계획구역과 면지역에서 농·임·축산·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, 저장고, 작업장, 퇴비사, 축사, 양어장 등의 건축물
- (2)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,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의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
- (3)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일정한 자역요건을 갖추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 건축물

주택회보